

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18.03.05.(월) 19:00
2. 회의장소 : 예명대학원대학교 201호 강의실
3. 평의원 출석현황

평의원정수	재적평의원	참석평의원
11	11	9

- 참석자(9명): (교원평의원)강응섭, 윤혜진 (직원평의원)권혁달, 방진희, (학생 평의원)유정원, 이영희, 이재혁 (동문평의원)임경자 (외부평의원)조영임
- 불참자(2명): (동문평의원)이현규, (외부평의원)김일남

4. 개 회(성원) (의원보고 및 개회(성원))

○ 2018학년도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보고합니다.

직위	이름	재임기간	년수	비고
의장	윤혜진	2018.03.01.~2019.02.28.	1	교원평의원
의원	강응섭	2018.03.01.~2019.02.28.	1	교원평의원
의원	방진희	2018.03.01.~2019.02.28.	1	직원평의원
의원	권혁달	2018.03.01.~2019.02.28.	1	직원평의원/신임
의원	유정원	2018.03.01.~2019.02.28.	1	학생평의원/신임
의원	이영희	2018.03.01.~2019.02.28.	1	학생평의원
의원	이재혁	2018.03.01.~2019.02.28.	1	학생평의원/신임
의원	임경자	2018.03.01.~2019.02.28.	1	동문평의원
의원	이현규	2018.03.01.~2019.02.28.	1	동문평의원
의원	조영임	2018.03.01.~2019.02.28.	1	외부평의원
의원	김일남	2018.03.01.~2019.02.28.	1	외부평의원

5. 전차 회의록 2018.01.23.(화)

제1의안: 2018학년도 교비회계, 등록금 및 비등록금회계 예산(안) 자문

6. 심의 안건

제1의안: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(안) 심의

7. 회의 내용

제1의안: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(안) 심의

대표 간서명	방진희	방진희	이영희	이영희	이재혁	이재혁
--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○ 윤희진 의장: 개교 이후 개정한 바 없었던 규정의 개정 및 교육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도록 제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. 제안하는 규정은 6대 규정의 제정 및 개정(안)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.

가. 「교과목 개설에 관한 내규」의 개정(안) 심의

제안: 본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「교과목 개설에 관한 내규」의 별표 1(교과과정표)을 영문 성적서의 발행 및 외국인 학생의 수강신청 등의 증가로 인하여 교과목의 영문표기(병기), 영문 교과목의 표준화 및 코드의 표준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합니다(붙임: 교과목 개설에 관한 내규 개정서).

나. 「예명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」의 제정(안) 심의

제안: 교육부로부터 대학원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각 대학의 특징에 맞도록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제정 및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받아 대학원생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준수되기 위해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(안)을 제안합니다(붙임: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서).

다. 「외래강사 규정」의 개정(안) 심의

제안: 개교 시 규정의 제 조항을 정비하여 외래강사 규정 개정(안)을 제안합니다. 주요골자와 개정안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주요 골자

- 가. 외래강사의 자격을 학위위주에서 범위적용 완화(제2조 제3항 및 4항 신설)
- 나. 외래강사의 위촉일을 개강 전으로 정비(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)
- 다. 외래강사의 위촉기간 정비(제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)
- 라. 외래강사의 학생교육 의무 및 학생평가에 따른 조항 정비(제5조의2)
- 마. 외래강사료의 재정비(별표 1)

외래강사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자격) ① 생략 ② 제1항의 자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교과목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락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자격)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개정> 1. 담당 학과목의 성질상 전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2.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</p>

대표 간서명	방진희 방진희	이영희 이영희	이재현 이재현
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	<p>이상일 때</p> <p>③ 외래강사의 채용은 만70세까지로 한다.<신설>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위촉) 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	<p>제3조(위촉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외래강사는 매학기 개강 1개월 전까지 채용한다.<신설></p> <p>④ 부득이한 사유로 채용한 외래강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개강 10일전까지 변경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.<신설>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4조(위촉기간) 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	<p>제4조(위촉기간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채용기간은 외래강사의 연속 최대 채용기간은 초임 학기로부터 3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<신설></p> <p>④ 제2조제3항 및 본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신설></p>																								
	<p>제5조의2 (의무)① 외래강사는 담당과목의 강의와 학생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총장은 외래강사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, 평가결과가 소정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.<본조신설>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7조(제출서류) 외래강사를 신규 위촉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생략</p> <p>3. 생략</p> <p>4. 생략</p>	<p>제7조(제출서류) 외래강사를 신규 위촉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단, 유입의 경우는 제외한다.<개정>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현행과 같음</p> <p>3. 현행과 같음</p> <p>4. 현행과 같음</p> <p>5. 사진(반명함판) 1매<신설>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<별표 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외래 강사료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>기준</th> <th colspan="3">강사료</th> </tr> <tr> <td rowspan="2">1시간당</td> <th>일반</th> <th>우수</th> <th>특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,000</td> <td>25,000</td> <td>3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준	강사료			1시간당	일반	우수	특급	20,000	25,000	30,000	<p><별표 1></p> <p>가. 외래강사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학점당(원)</th> <th>자격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외래강사 (트랙A)</td> <td>70,000</td> <td>① 박사학위자 ② 교수경력자</td> </tr> <tr> <td>외래강사 (트랙B)</td> <td>50,000</td> <td>① 박사학위자 ② 대학원장의 적합한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 통역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>시간당(원)</th> <th>자격 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,000</td> <td>① 한국어와 영어 능통자 ② 해당과목 통역 가능 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학점당(원)	자격 기준	외래강사 (트랙A)	70,000	① 박사학위자 ② 교수경력자	외래강사 (트랙B)	50,000	① 박사학위자 ② 대학원장의 적합한 자	시간당(원)	자격 기준	50,000	① 한국어와 영어 능통자 ② 해당과목 통역 가능 자
기준	강사료																								
1시간당	일반	우수	특급																						
	20,000	25,000	30,000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학점당(원)	자격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외래강사 (트랙A)	70,000	① 박사학위자 ② 교수경력자																							
외래강사 (트랙B)	50,000	① 박사학위자 ② 대학원장의 적합한 자																							
시간당(원)	자격 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
50,000	① 한국어와 영어 능통자 ② 해당과목 통역 가능 자																								

라. 「외국인 유학생 학사운영 및 관리규정」의 제정(안) 심의

제안: 「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」는 입학사정에 대한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

대표 간서명	방진희	이영희	이재현
--------	-----	-----	-----

관리를 진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별도의 「외국인 유학생 학사운영 및 관리규정」을 마련하고자 본 규정의 제정(안)을 제안합니다(붙임: 외국인 유학생 학사운영 및 관리규정 제정서).

마. 「예명대학원대학교 부설 상담센터 운영규정」의 제정(안) 심의

제안: 본교에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①건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재학생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, ②재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·외국인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적응하기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예명대학원대학교 부설 상담센터 운영규정」의 제정(안) 제안합니다(붙임: 예명대학원대학교 부설 상담센터 운영규정 제정서).

바. 「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」의 개정(안) 심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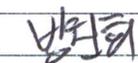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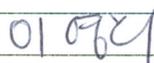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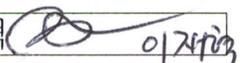
제안: 본 내규 제2조(지원자격) 중 학칙 제30조제2항의 영어사용과정(영어트랙)은 “한국어 사용능력에 구애되지 않는다”라 하였으나 “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”로 강화하고자 합니다. 또한 내규 제7조(제출서류)를 이에 맞춰 정비하고자 본 내규를 개정 제안합니다. 주요 골자와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주요 골자

가. 제2조(지원자격) 중 학칙 제30조제2항의 영어사용과정(영어트랙)은 “한국어 사용능력에 구애되지 않는다”라 하였으나 “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”로 강화하고자 합니다.
나. 제7조(제출서류) 중 “카”항을 영어사용과정과 한국어사용과정으로 구분하여 증비서류 제출항목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.
다. 제10조(기타) 중 한국어사용과정 학생 중 한국어능력이 미흡한 경우 언어교육원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「외국인학생입학에 관한 내규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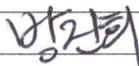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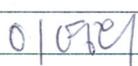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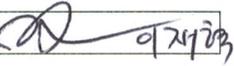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원 자격)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전형에 대한 외국인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석사학위과정 국내·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</p> <p>2. 박사학위과정 국내·외 정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</p>	<p>제2조(지원 자격)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전형에 대한 외국인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석사학위과정 국내·외 정규 대학에서 --(중략)--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. 단, 학칙 제30조제2항의 영어사용과정은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</p> <p>2. 박사학위과정 국내·외 정규 대학에서 --(중략)--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. 단, 학칙 제30조제2</p>

대표 간서명 방진희  이영희  이재혁 

	<p>항의 영어사용과정은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</p>
<p>제7조(제출서류)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입학전형 시 제출 서류</p> <p>가. ~ 차. 생략</p> <p>타. 반명함판 사진 3매</p>	<p>제7조(제출서류)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입학전형 시 제출 서류</p> <p>가. ~ 차. 같음</p> <p>카. 언어 능력 증빙 서류</p> <p>1) 영어사용과정</p> <p>① 공인영어능력시험 점수 제출 :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</p> <p>②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 또는 학부과정을 영어로 사용하여 학업을 마친 증빙서류 (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) 제출</p> <p>2) 한국어사용과정</p> <p>① 국립국어원에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시험(토픽) 3급 이상 취득 한 자</p> <p>② 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 없을 경우 한국어어학연수 1년 이상 이수 했으며 본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수준평가에 합격 하는 자</p> <p>타. 같음</p>
<p>제10조(기타) 국제 학술 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 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사용능력이 미흡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부속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</p>	<p>제10조(기타) 국제 학술 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 과정에(삭제) 한국어사용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사용능력이 미흡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부속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.</p>

- 윤혜진 의장: 제안한 6개 규정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이재혁 의원: 제규정심의위원회와 대학원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친바 있어 승인 의결에 동의합니다.
- 이영희 의원: 동의에 재청합니다.
- 윤혜진 의장: 동의와 재청이 있어 찬성 여부를 묻겠습니다.
- 위원 전체: 모두 찬성합니다.
- 윤혜진 의장: 참석 평의원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위 6개의 규정의 개정(안)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찬성 9명: 강응섭, 윤혜진, 권혁달, 방진희, 유정원, 이영희, 이재혁, 임경자, 이현규, 조영임, 반대 0명).

8. 폐 회

대표 간서명	방진희 	이영희 	이재혁 
--------	---	--	---

○ 윤혜진 의장: 2018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.

2018년 3월 5일

의 장 윤 혜 진 윤혜진
교원평의원 강 응 섭 강응섭
직원평의원 권 혁 달 권혁달
직원평의원 방 진 희 방진희
학생평의원 유 정 원 유정원
학생평의원 이 영 희 이영희
학생평의원 이 재 혁 이재혁
동문평의원 임 경 자 임경자
외부평의원 조 영 임 조영임